

광역협력권사업 기술료 설명회

2020. 06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1 광역협력권사업 공고문 내용 요약

공고문 내용 요약

구분	내 용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징수 : *시도별 상황에따라 별도적용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공고문내 참조 규정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정액기술료 징수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착수금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대기업	4%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gb.irpe.or.kr)-교육자료에 공고문 및 규정 등록

2 기술료 제도 및 규정 안내

01 _ 기술료 정의

가 (일반적인) 기술료 정의

- 기술료(Royalty)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계약 형식으로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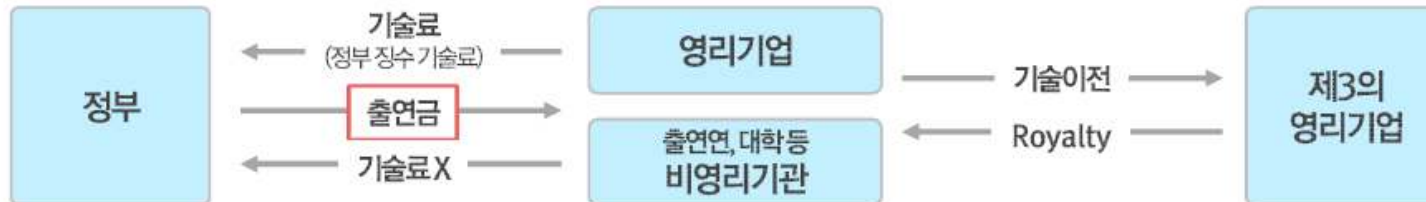
나 정부 R&D 사업의 기술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82호, 시행 2017.1.1)

- 제2조(정의)의 7호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의 8호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시행 2018. 04. 30 개정)

- 제3조(용어정의)의 3호 “기술료”라 함은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02 _ 기술료 제도

다)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는 정액기술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상기술료 제도의 보완방법으로 사용

구분	정의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 대가를 결정 *제조원가, 절감금액, 매출액, 순이익, 계약제품단위 등을 연동기준으로 사용
정액(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매출액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절대금액으로 정함 *지급방법: 일시불과 분할금으로 나뉨

라) 정부 R&D 기술료의 의의

- 국가 R&D를 통한 유무형의 성과를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R&D 선순환 구조 창출



02_ 기술료 제도

마) (산업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대상

- (징수대상)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주관기관 또는 영리참여기관
- (비징수대상) 활용촉진을 위한 공개활용,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공고에 따라 비징수함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
- 경상기술료 :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징수
(2015.1.1 개정, 2009.1.1 협약과제부터 적용)

기술료 납부금액

-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서 잔액을 제외한 실사용 금액에 기술료율을 곱함
- 계산식: (정부출연금액 - 정산 · 환수금액) x 기술료율(기업규모별 적용)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7호, 2019. 08. 08)
- 제3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 2019. 08. 20)
-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8호, 2019. 08. 08)
- 제41조(기술료의 징수 등)
- 연구과제 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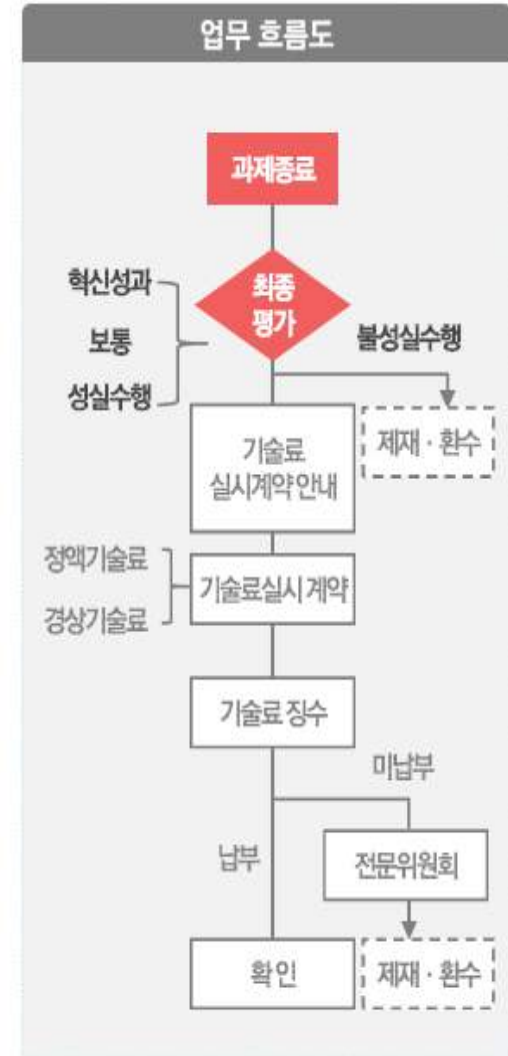
바 기술료 제도

기술료 징수대상

- 개발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개발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이 적용됨

최종평가 결과

구분	상세내용	평가점수	기술료 납부
혁신성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	○
보통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90점 미만 75점 이상 과제	○
성실수행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75점 미만 60점 이상 과제	○
불성실수행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 과제	×



아 기술료징수의 유형(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 선택)

정액기술료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에 대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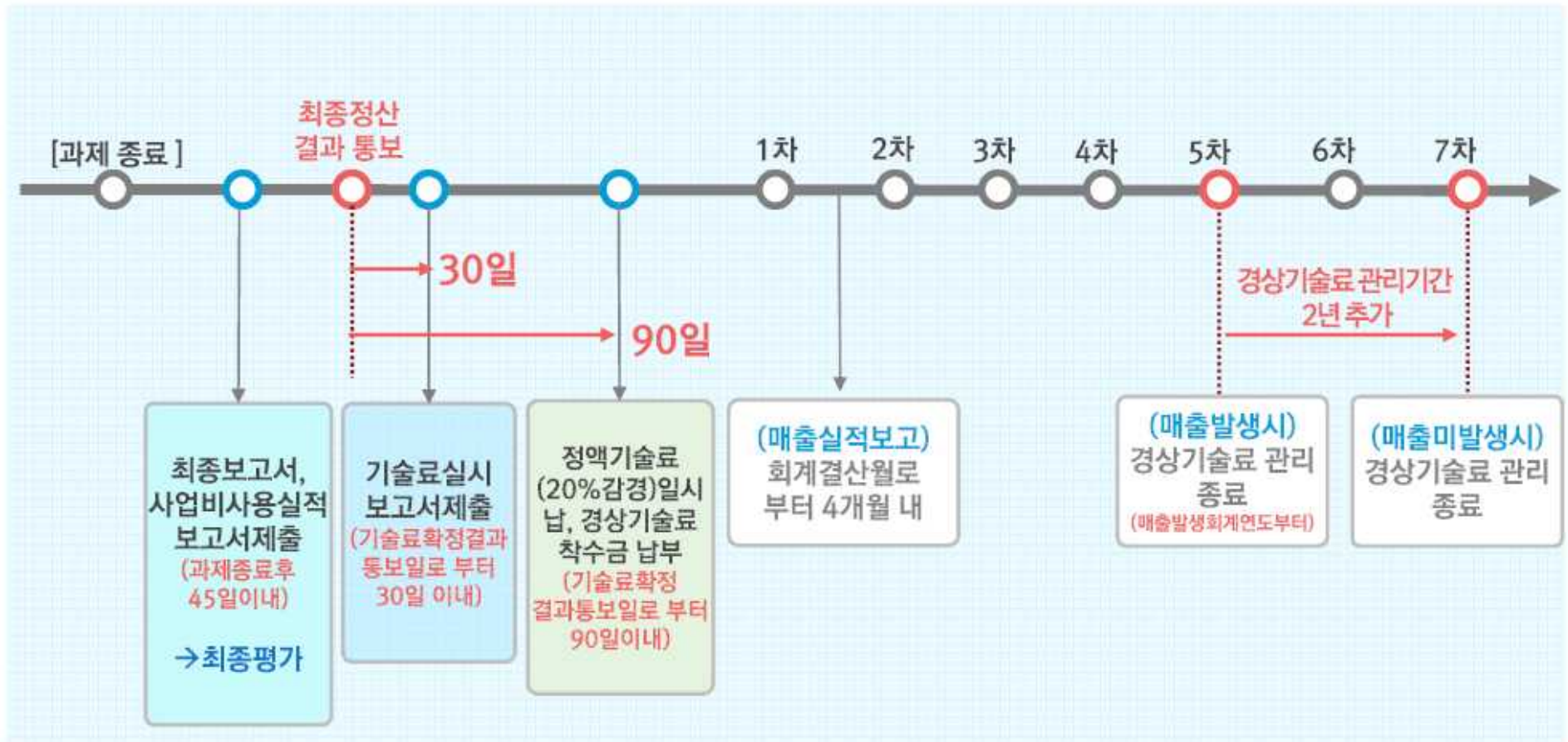
- (정의) 협약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비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 (실시계약)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납부수단 제출(일시납 현금, 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등)
- (징수)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경상기술료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에 대하여 기술 활용 정도에 비례로 정함

- (정의) 협약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 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 (실시계약)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징수) 착수 기본료와 매년 사업 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기술료 징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경상기술료 보고서 제출(재무제표, 매출명세서, 회계감사 결과확인서 등),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 먼저 도래한 시점
- (최대징수율)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대비 1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대비 24%, 대기업: 정부출연금 대비 48% 이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2016.1.1 이후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성과/성실수행**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우선 적용



[참고] 기술료 납부 및 관리기간



기술료 납부 예시_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 10억원인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

(단위:억원)

구분	결정기술료	1년	2년	3년	4년	5년
대 기업	4	0.8	0.8	0.8	0.8	0.8
중견기업	2	0.4	0.4	0.4	0.4	0.4
중소기업	1	0.2	0.2	0.2	0.2	0.2

정부출연금 10억원인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일시/조기 납부 할 경우

(단위:억원)

구분	결정기술료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0%감경)	통보일로부터 1년 내 (15%감경)	통보일로부터 2년 내 (10%감경)	통보일로부터 3년 내 (5%감경)
대 기업	4	3.2	3.4	3.6	3.8
중견기업	2	1.6	1.7	1.8	1.9
중소기업	1	0.8	0.85	0.9	0.95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 10억원인 실시기업이 경상기술료를 납부 하는 경우

(단위:억원)

구분	착수기본료	매출정률 기술료율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누적 한도 징수액	최대 징수액	징수기간
대 기업	0.4 (4%)	매출액의 4%	4.8 (48%)	5.2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 먼저 도래한 시점
중견기업	0.2 (2%)	매출액의 2%	2.4 (24%)	2.6	
중소기업	0.1 (1%)	매출액의 1%	1.2 (12%)	1.3	

* 매출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누적 한도 징수액 대기업: 96%, 중견기업: 48%, 중소기업: 24%

* 경상기술료를 완납할 경우: 신규과제 신청시 3년간 우대가점 부여

*

정액기술료 관련 양식

기술실시보고서(정액기술료 선택)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실 시 기 업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 20 . . .						
실시보고서제출기한	20 . . .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액 (B)	정부납부기술료징수대상 정부출연금(C) (C= A-B)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 규모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징수율(a)	%						
감면율(b)	%						
감면금액(c)	원						
정부납부기술료 총액	원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정부출연금 × 징수율 - 감면금액)						
세 부 납 부 일 정							
납부방법	일시납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납입기한	20 . . . 까지						
납부금액 (원)							
<p>1. 실시기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및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p> <p>2. 2016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이전 협약(단계·연차)과제는 일시납(40%감 면), 1년 이내(30%감면), 2년 이내(20%감면), 3년 이내(10%감면), 2016년 이후 협약(단계·연차)과제는 일시 납(20%감면), 1년 이내(15%감면), 2년 이내(10%감면), 3년 이내(5%감면)이 적용됨.</p>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6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에 의거하여 기술보고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1호]

* 통보 후 45일 이내 제출

*

경상기술료 관련 양식

[별지 서식 제3호]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년도 : 201
(단위 :

구분	품목명 또는 용역명	과제 관련 매출액 (A)	매출에누리 및 환입, 매출할인 (B)	사업수행 결과물의 기술기여도 (C)	순매출액 (D=(A-B)*C)	기술료 (F=D*경상 기술료율)
제품						
상품						
용역						
계						

[별지 서식 제4호]

매출 미발생 사유서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 시장요인
-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

경상기술료 관련 양식

[별지 서식 제5호]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I		
과제명			
기술실시기관명		과제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20	총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20		

□ 경상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20
과제관련 매출액 ¹⁾ (원)(A)	
기술기여도 ²⁾ (%) (B)	
기술료 요율 ³⁾ (%) (C)	4%(대기업), 2%(중견기업), 1%(중소기업) 중 택 1
발생 경상기술료 ⁴⁾ (원) (A×B×C)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경상기술료 매출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 : (직인) 대표이사 : (인)

전담기관장 귀하

【첨부】

1. 당해 연도 실시기업 재무제표
2.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
4. 기타 매출증빙서류 등